##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20.09.20.

Plus 신종 개인용 MMF2호 [펀드코드: 86353]

투자 위험 등급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5 4 6 매우 높은 다소 보통 낮은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위험 낮은 위험 위험 위험

플러스자산운용㈜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6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우량 기업어음(ABCP포함)/CD/정기예금/채권 등 단기금융상품에 주로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개인투자자전용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입니다. 장부가와 시가와의 괴리조정에 따른 위험, 채권 투자에 따른 금리변동위험 및 신용위험 등이 있으므로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Plus 신종 개인용 MMF2호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u>투자전략</u> 분류

이 투자신탁은 우량 기업어음(ABCP포함)/CD/정기예금/채권 등 단기금융상품에 주로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개인투자자 전용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입니다.

투자신탁, 단기금융(MMF),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종류형

# 투자비용

명칭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단위:천원)			
(클래스)	판매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미징구 - 오프라인형(C)	없음	0.35%	0.23%	0.21%	36	75	114	200	451
수수료미징구 - 온라인형(Ce)	없음	0.235%	0.115%	0.24%	25	50	78	136	307

-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 (주2)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21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구분	최초설정일	19.09.21	18.09.21	17.09.21	15.09.21	설정일이후
		~ 20.09.20	~ 20.09.20	~ 20.09.20	~ 20.09.20	
수수료미징구 - 오프라인형(C)(%)	2008-07-30	1.33	1.49	1.49	1.42	2.40
비교지수(%)	-	0.00	0.00	0.00	0.00	0.00
수익률 변동성(%)	-	0.03	0.03	0.03	0.03	0.03

- (주1) 비교지수: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을 적절히 반영하는 비교지수를 선정하기 곤란하여 비교지수의 기재는 생략하였습니다.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 후 해당기 간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 (주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용전문 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	<b>용현황</b>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단기금융)		운용			
			식위	집합투자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경력년수
				기구 수	F0117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이관홍	1968	책임(전무)	11개	43,331억원	1.38%	1.69%	1.39%	1.69%	22년 5개월

-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 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 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 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 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 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 니다.

	니다.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 손실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 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이 집합투자기구는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 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요투자	금리변동위험	채권 금리의 변동에 따라 채권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 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 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채무자, 투자대상회사 또는 거래상대방(보증인 포함)의 신용등급의 변화나 채무불이행 또는 계약위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재산상의 손실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리험	환매청구시 위험	환매를 청구하시는 날과 환매대금을 결정하는 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시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장부가와 시가와의 괴리 조정에 따른 기준가격 변동 위험	장부가에 따라 계산된 기준가격과 시가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를 수시로 확인하여 그 차이가 1000분의 5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재산의 가격을 조정하거나 매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므로 이 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이 급등락할 수 있습니다.
	유동화증권 투자위험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인 기초자산을 담보로 하여 발행된 유동화증권(ABS, ABSTB, ABCP) 중 신용 공여된 유동화증권의 신용등급은 신용공여 기관의 신용등급에 연동됩니다. 하지만 별도의 신용공여가 없는 유동화증권의 경우에는 기초자산의 신용등급의 변동에 유동화증권의 신용등급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동화 증권은 유동화 자산의 현금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기초자산 발행사의 파산 및 채무불이행 등)이 발생할 경우, 유동화증권의 투자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후 5시 이전에	지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

매입 방법

주요

투자자

유의사항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오후 5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

환매 방법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 구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 격을 적용. 제2영업일(D+1)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환매	공고되는 기준가 경우 여 공고되는 수 역 니다. 1. 수익자가 금융에 따라 수취한 결자신탁 수익증권미리 약정한 경우 2. 수익자가 급여로 수취일에 이 로	일로부터 제3영업일(D+ 격을 적용하여 매입 에는 자금을 납입한 영 식증권의 기준가격을 적 ·투자상품 등의 매도나 열제대금으로 결제일에 ( 1을 매수하기로 판매회 등 정기적으로 받는 금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와 미리 약정한 경우	오구 구구 경의 왕합 왕매 이 투 사와 전으 매수 전으 대수 2. 수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 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 가격을 적용. 제3영업일(D+2)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 다음의 경우에는 환매청구일에 공고되는 수 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환매청구일에 환매대금 을 지급합니다. 1. 수익자가 금융투자상품 등의 매수에 따른 결 제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 투자신탁 수익증 권을 환매하기로 판매회사와 미리 약정한 경우 2. 수익자가 공과금 납부 등 정기적으로 발생하 는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 투자신탁 수익증			
수수료	없음	- 당일 기준가격 = (전		환매하기로 판매회사와  통액 - 부채총액) /전일 :			
	산정방법	- 1,000좌 단위로 원미	l만 셋째자리에서 반	올림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		
기준가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 인터넷 홈페이지 (dis.k			r · 안국금융투사입 	업외	
1,57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주1) 공휴일, 국경(	종류간 판매보수 등의 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		별 기준가격이 서로 디	나르게 산정됩니디 -	<b>.</b>	
	구 분		과세의 =	-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					
과세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역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로 종합과세 됩니다 (연금저축 가입자에 대한 과세> ①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종합자산관리계좌(ISA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를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를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5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전환금액"이라 함) 한도 ②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가입자의 수령개인출) 3세액공제						
			세액공제 대상	50세 이상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	세액공제율		
		4천만원 이하 (5.5천만원 이하)	400만원	600만원	15%		
		1억원 이하 (1.2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2억원 초과)	(700만원) 300	(900만원) )만원 )만원)	12%		
	※ 지방소득세 별도						

※ 50세 이상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적용 및 적용제외 대상

- 적용시기 : 2020.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 적용기한 : 2022.12.31.

- 적용제외 대상 : ① 종합소득금액 1억원 또는 총급여 1.2억원 초과자

②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금액 2천만원 초과자)

#### ④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3.3% (지방소득세 포함)

#### ⑤분리과세 한도

1,200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

## ⑥연금외 수령시 과세

- 통상적인 경우: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 부득이한 경우: 기타소득 13.2%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부득이한 연금 외 수령사유: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 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에 따른 3개월 이상 요양, 금 융기관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⑦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이 승계 가능

#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과세>

#### ①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	50세 이상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	세액공제율
4천만원 이하			1 5 0/
(5.5천만원 이하)	400만원	600만원	15%
1억원 이하	(700만원)	(900만원)	
(1.2억원 이하)			120/
1억원 초과	300	만원	12%
(1.2억원 초과)	(700	만원)	

## ※ 지방소득세 별도

- ※ 50세 이상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적용 및 적용제외 대상
- 적용시기 : 2020.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 적용기한 : 2022.12.31.
- 적용제외 대상 : ① 종합소득금액 1억원 또는 총급여 1.2억원 초과자
  - ②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금액 2천만원 초과자)

## ②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 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수령 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 ③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

연금수령, 일시금수령 등 수령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집합자업

자

이 투자신탁은 법 제232조에 의한 전환형집합투자기구가 아닙니다.

플러스자산운용㈜ (대표번호: 02-3787-2700 / 인터넷 홈페이지 : www.plusasset.com)

모집기간	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10조 좌				
효력발생 일	2020년 09월 29일			존속 기간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제	다업자(www	v.plusasset.com), 한국금	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참고			
참조	집합투제	사업자의 시		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 -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							
	종류	(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다음 전 마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약 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 해당 집합투자기구는 판매수수료선취형(A) 클래스가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약수로선취형(A)과 총 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집합투자 기구의 종류	판매 경로	온라인 (e)	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		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 되지 않습니다.			
		경로	오프라인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	•	남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 공됩니다.		
	기타	개인연금 (P1) 퇴직연금	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 니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P2)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 · /= · · · · = · / · ·			

##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plusasset.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plusasset.com)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plusasset.com)